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9
----------	-------

발의연월일 : 2015. 4. 30.

발 의 자 : 배재정 · 박남춘 · 이개호
양승조 · 박홍근 · 정호준
한명숙 · 유은혜 · 유기홍
진선미 · 유승희 · 우상호
김상희 · 이목희 · 정청래
김제남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한편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을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 나. 아직 창작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46조의2 신설).
- 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정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나 적극적 조사 의무를 금지함(안 제104조의9 신설).
-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명령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3조의2 삭제).
- 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그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미래 창작에 대한 양도 등의 금지) ①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창작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져 창작이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 신탁은 제외한다)은 무효로 한다.

②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 신탁은 제외한다)은 당시에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었던 이용방법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6조의3(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저

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양수인의 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과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도 적용된다.

제88조 중 “제45조제1항을”을 “제45조제1항·제46조의2·제46조의3을”로,

“제46조를”을 “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을”로 한다.

제6장 및 제102조의 제목 중 “책임 제한”을 각각 “면책”으로 한다.

제6장에 제10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일반적 감시 의무의 금지)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02조제1항의 면책 요건 및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장 또는 제공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

② 제1항은 제10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제13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복제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를 “불법복제물의 전송자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법복제물등의”를 “불법복제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을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전송자가 불법복제물을”로, “복제·전송자의”를 “전송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가 동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재산권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① (생략)</p> <p>② <u>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재산권을 그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u></p> <p>③ <u>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46조의2(미래 창작에 대한 양도 등의 금지) ① <u>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창작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져 창작이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 신탁은 제외한다)은 무효로 한다.</u></p> <p>② <u>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u></p>

<신 설>

신탁은 제외한다)은 당시에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었던 이용 방법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6조의3(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양수인의 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권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과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도 적용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
-----제45조제1항·제46조의2·제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 ③ (생략)
<신설>

46조의3을-----

-----제4

6조·제46조의2·제46조의3을----

제6장 -----

면책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9(일반적 감시 의무의
금지)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제102조제1항의 면책 요건
및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2
조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련
하여 저장 또는 제공하는 정
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
스 이용자의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

② 제1항은 제10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삭 제>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

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板的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

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복제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1. 불법복제물의 전송자에

2. 불법복제물의

3. 제1항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전송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자의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가 동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u>지 아니한다.</u></p> <p>제142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u>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5. <u>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u></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	---